

해외봉사활동 학점인정 내규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해외봉사활동 학점인정 내규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학칙 시행세칙 제11조 10항에 의거하여 교류협정에 의해 실시한 해외봉사활동에 대한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해외봉사활동 학점인정제’란 학생이 글로벌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대학의 교류협정에 따라 학생지원팀이 선정·공고한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서 4주 이상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를 말한다.

② 이 내규에서 ‘해외봉사교과목’이란 학생이 해외에서 4주 이상 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에 대해 개설되는 교과목을 말한다.

제2장 해외봉사활동 학점인정제 운영

제3조(신청대상) 해외봉사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단 초과학기 및 졸업학기, 졸업(유예) 예정자, 휴학생은 제외한다.
2. 편입생의 경우 본교에서 최소 1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성적 완료된 자
3. 우리 대학 학칙에 의하여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해당 봉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자

제4조(신청 및 선발) ① 해외봉사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생지원팀에서 선정·공고한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지원팀을 경유하여 해외봉사단원 신청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처장은 제①항의 지원자 중에서 우리대학교 및 봉사기관의 선발기준에 따라 우선추천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③ 해외봉사단 단원으로 최종 선발된 학생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해외봉사 학점인정제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외봉사단 단원으로 최종 선발된 학생은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학점인정을 받는 학기에 반드시 본교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수강신청) 학생이 제출한 ‘해외봉사 학점인정제 참여신청서’가 최종 승인된 경우, 학생지원팀은 해당 교과목에 대한 수강신청 처리를 교무팀에 요청한다.

제6조(업무담당) 해외봉사활동 학점인정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학생지원팀 해외봉사 담당자가 해외봉사 활동 학점인정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한다.

제3장 학점인정

제7조(교과목의 편성) ① 해외봉사활동 학점인정제를 통해 이수할 수 있는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교과목명	이수 구분
글로벌 사회봉사	교양선택

② 업무담당자는 학사업무 일정에 따라 제 ①항의 교과목에 대하여 교무팀에 교과목 편성을 요청한다.

제8조(학점인정) ① 해외봉사활동 학점인정제에 따른 학점인정은 재학 중 최대 15학점 이내로 인정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의 유형 및 기간에 따른 인정학점은 다음과 같다. 단, 봉사활동기간 산정 시에는 국내 교육기간을 포함한다.

구분	봉사활동과정(시간)	학점	비고
단기	4주 이상 과정	3학점 이내	1일 최소 6시간 이상, 1달 최소 20일 이상 봉사활동 총족 필수
중기	8주 이상 과정	6학점 이내	
	12주 이상 과정	9학점 이내	
장기	16주 이상 과정	15학점 이내	

② 해외봉사활동을 수행하는 학기에는 해당 학기의 수강신청 가능 학점 내에서 해외봉사활동 이수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학점은 온라인 교과목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 교과목의 수강신청은 학생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③ 해외봉사활동 이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봉사활동 기간의 1/4 이상 결석한 자. 단, 학칙시행세칙 제14조의2(유고결석)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결을 허가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봉사활동 중 휴학한 자
3. 봉사활동 기간이 기준에 미달한 자
4.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사전계획서, 활동일지, 결과보고서 등)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학칙을 위반한 자
6. 고의적으로 현장봉사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7.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④ 해외봉사활동 학점은 계획된 봉사활동기간을 모두 이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청학기 총 활동기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봉사활동 기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파견국가의 자연재해 또는 사회재난 발생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질병 또는 상해 등으로 정상적인 봉사활동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유로 잔여기간 봉사활동 수행이 어려운 경우

- ⑤ 해외봉사활동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학과와 동일한 학사일정에 따라 파견종료 후 2주 이내에 학생 지원팀으로 주관기관에서 발행한 봉사단경력증명서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금 납부 및 경비) 등록금은 전액 납부하며, 해외봉사활동에 필요한 제경비는 파견 해외봉사단의 지원금과 학생 본인이 부담한다.

제10조(성적평가 및 성적증명서 표기) ① 성적은 봉사활동을 수행한 기관에서 발부한 봉사단경력증명서와 결과 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학생처장이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교무처에 통보한다.

② 교과목의 성적은 P(PASS), NP(NONPASS)로 처리한다.

제11조(보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26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